빈틈없는 학생 성장 지원으로 인재 양성에 기여

2026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6. 2.

AI우수장학부

Ⅰ.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개요 ····· 1

Ⅱ. 신규장학생 선발 ····· 4

Ⅲ. 계속장학생 지원 ····· 12

Ⅳ. 일시지원 선발 ····· 18

Ⅴ.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 21

Ⅵ. 사업 운영관리 ····· 26

Ⅶ. 사업 추진일정 ····· 31

[참고1] 신규장학생 제출서류 양식 ····· 32

[참고2]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 33

[참고3]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35

[참고4] 신청인 동의서 ····· 42

[참고5] 교육지원대상자의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확인서 ····· 51

2026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5년	2026년
교육지원 대상자 선발	ㅇ 교육지원자 **Ⅱ유형 선발 불가**	ㅇ 교육지원자 **Ⅱ유형 선발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우선 면제하고 전문기술인재 장학생 자격 부여

Ⅰ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개요

1. 지원규모

□ (지원예산) 90.9억 원

□ (지원인원) 연간 1,140명 내외

ㅇ Ⅰ 유형: 400명 내외, Ⅱ 유형: 740명 내외

2. 지원대상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 조 제 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3. 지원내용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ㅇ Ⅰ유형: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ㅇ Ⅱ유형: 등록금 전액

	▪	
	▪	
	▪	

「 」 「 」 「 」

해당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횟수에 포함**

단 대학이 교육지원대상자 등임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등록금 지원이 불가능하며 등록금 면제를 우선 적용하고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확인서」참고 를 대학이 징구하여야 함

4. 지원기간

□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 지원)

□ (지원한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제의 정규학기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서 동 장학금*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지원

-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수혜횟수에 포함(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수혜횟수 1회 누적)
- 기 수혜자가 편입, 재입학 후 장학생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 대학에서의 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

○ 주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기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학위에 한하여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된 해당학기에 한해 회 지원

Ⅱ 신규장학생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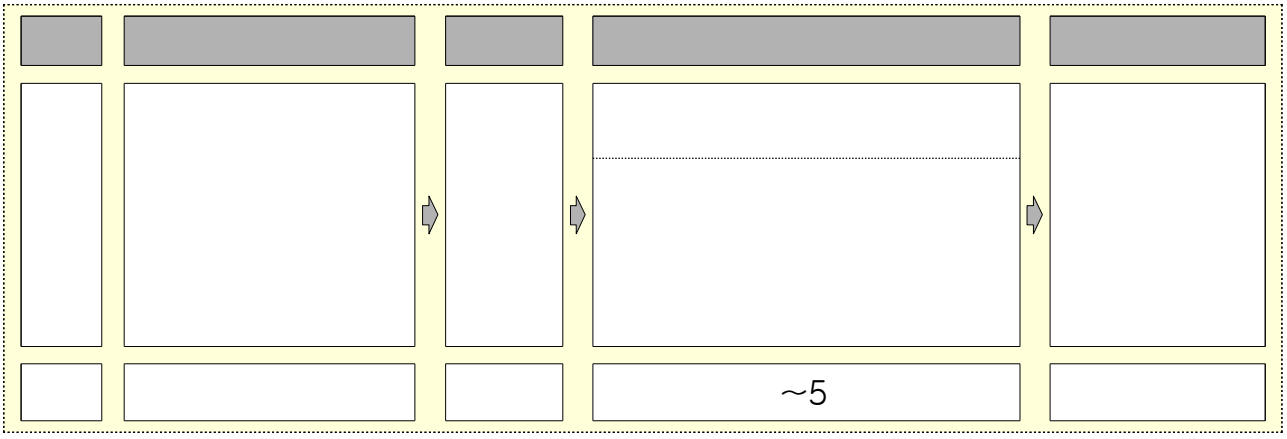

1. 선발대상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기본 신청자격)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잔여학기가 1개 학기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 (선발제외 대상)

ㅇ 년도 현재 전문기술인재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전문기술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상실자

ㅇ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ㅇ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 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 최대 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계약학과 등록금 전액 일부 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

2. 대학 참여

□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신청방법)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온라인 사업참여 신청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온라인 원클릭 참여 신청

- 단, 재단에서 공지한 참여신청 종료일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 대학의 경우 참여 신청 시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참고2)를 총장 날인 후 제출(공문)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학생 신청

□ (신청대상) 대학* 내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심사 후, 신규장학생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추천대상자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및 필수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필수서류 학업계획서 를 지정된 파일형식으로 제출

4. 선발인원 배정

□ (배정개요) 각 유형별 총 선발인원(I 유형 명 유형 명 에 대해 지역별 선발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을 적용하여 아래 배정기준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배정기준) 참여신청 대학에 대학별 유형 명 유형 명씩 기본배정 후 나머지 인원은 정원 내 재학생 수에 따라 차등 배정

ㅇ 선발유형 유형 별로 지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별 총 배정인원 조정

5. 선발방법

□ (선발방법)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아래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및 추천

(유형별 선발인원) 선발 유형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 순위는 I유형, 후순위는 II유형으로 선발하여 추천

(학년별 선발인원)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선발기준)

ㅇ 기본자격 **직전학기 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이 백분위 점수 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학년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되 평가항목 중 학업성적의 비중을 경제적 수준의 비중을 로 설정

○ 학년 **취업역량개발 학업 성적 경제적 수준** 비중으로 평가하고 세부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수립

□ (장학생 추천

ㅇ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배정인원의 최소 2배수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

ㅇ 각 유형별 선발자를 확정하여 추천하되, 미추천된 차순위 학생은 학생별 후보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기간 내 후보자 유형 로 관리

III 계속장학생 지원

1.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당해 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계속장학생 장학생 자격 유지자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학기 계속지원

ㅇ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점 이상

ㅇ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학점 이상

2. 계속장학생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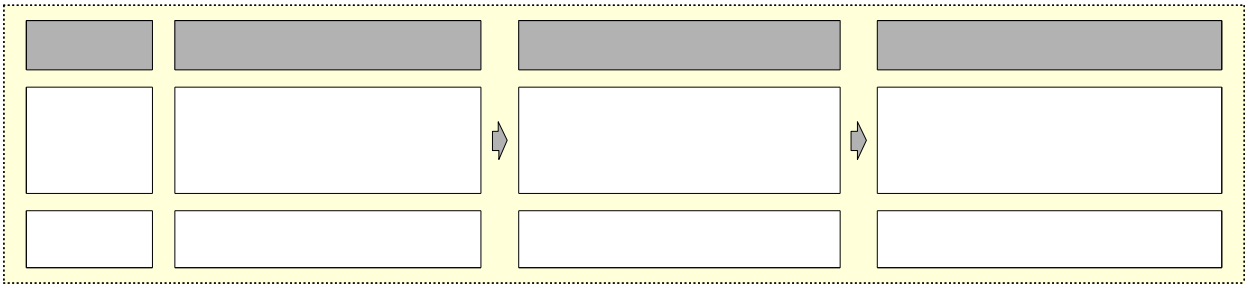

□ (추진절차) 대학은 대학 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관리자포털 을 통해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후 장학생 추천

- ㅇ 대상자 확인: 장학생 추천 기간 내 우선감면 대상자 확인
- ㅇ 장학생 추천: 우선감면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학사 수납정보 업로드 후 장학생 추천

3.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이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은 반드시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필요

□ 학적 변동 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IV 일시지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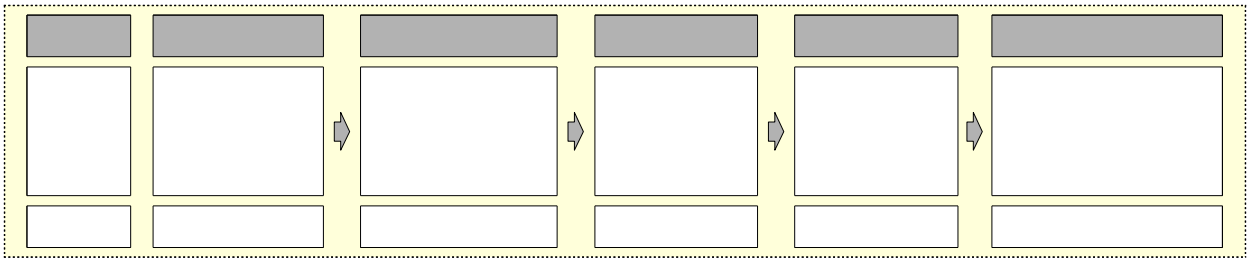

1. 지원기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전문대학의 정규과정 재학생(1학년 이상, 졸업학기자 포함) 중 해당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단, 기본 선발자격 충족 필요)

○ (기본 선발자격) 1학년* 이상 정규과정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자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직전학기 학점 이상

○ 선발제외 대상

2. 지원규모

□ 선발규모 신규장학생 선발 미달 계속장학생의 휴학 반환 및 성적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지원금액 선발된 해당 학기 회 등록금 전액 생활비 미지원

3. 배정 및 선발기준

□ (대상대학) '26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 신규장학생 선발 대학

□ (배정기준) 참여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26년 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4:6)

□ 선발기준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및 추천

4. 선발절차

□ 대상자 선발 등록 배정인원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관리자포털 에 대상자 업로드

□ 학생신청) 대학에서 추천한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대학추천 신청완료 학생에 대해 대학 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관리자포털 에서 장학생 추천

V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

1. 지급절차

□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일괄지급(단, 지급회차는 학기당 2회에 한함)

ㅇ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재단 내 대출상환금 제외) 지급

ㅇ 대학은 계속지원학기 학기 마지막 회차 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 대학 준비 사항

ㅇ (학생 수납원장 등록) 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 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ㅇ (대학 수납계좌 등록) 대학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개설 후 계좌변경 시에는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2.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처리 방안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ㅇ 단, 우선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수혜 대상으로 승인·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ㅇ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등록완료 후에 학생 개별지급(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학생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장학금 지급 시, 해당학기 재단 내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내역 존재할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후 대학 지급

□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보다 등록금 면제를 우선 처리함

ㅇ 대학 의무부담 수업료 등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ㅇ 등록금 학생부담분과 생활비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은 지원 금액 산정 후 대학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 학기별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대학별 수행) 미수행 시 지급보류 등의 조치 진행

3.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장학금 반환 기준

□ 공통사항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박탈 기준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약정한 반환기간 내에 매월 분할하여 반환 가능(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제14조, 제17조~제19조 준용)

○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의 반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반환을 유예할 수 있음(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제16조 준용)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반환 건은 분할반환 및 반환유예 제외

○ 반환 관련 기타 사항은 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준용

4. 증명서 발급

□ 장학증서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장학증서 발급 회

□ 수혜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Ⅵ 사업 운영관리

1.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하여 지원 불가)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2. 학적변동 시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ㅇ 대학은 장학생의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 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ㅇ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전공심화과정 편입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3. 사업 및 사후 관리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 조 제 호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환수

ㅇ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대학이 장학금 지급 이후 본안 소송 패소 시 판결 확정일 기준연도 무관 기지급한 장학금 전액 환수

- 장학금 환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학이 부담하며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대학으로부터 환수

- 대학은 환수 절차로 인해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 장학금 반환 청구 등 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대학 모니터링

ㅇ 대학 현장 모니터링

- 점검 대학: 재단에서 대학을 선정

- 점검 내용

·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여부 확인 등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 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 수혜장학 상품명 등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감독 실시

ㅇ 대학 e-모니터링(대학 자체 점검)

- 점검 대학: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재단에서 선정)

- 점검 내용: 총 9개 항목 점검(장학생 선발, 지급·관리 등)

- 점검 방법: 관리자 포털을 통한 대학 자체점검(e-모니터링) 실시

- 점검 후 조치사항: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은 반환 등 대학 자체조치

4. 대학 의무사항

□ 장학생 선발 지원을 위한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하고 자체선발 및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ㅇ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자체선발 기준 등을 학내 공고하여, 장학금 수혜 의지가 있는 재학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ㅇ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재단에 정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만을 제공

□ 관련서류의 열람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장학생 추천 지급 관리에 따른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관

□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대응

□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 통보하고 중복지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반환

ㅇ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대학이 장학금 지급 이후 본안 소송 패소 시 판결 확정일 기준연도 무관 기지급한 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 대학은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반환 절차로 인해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 장학금 반환 청구 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당해연도 사업 참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 대학 패소 시 기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참고 제출 공문 필요

□ 대학의 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10년간 보존

5. 장학생 준수사항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 연락처 변경 시 소속학교로 즉시 연락

□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6. 기타사항

□ 본 업무처리기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Ⅶ 사업 추진일정

□ 신규장학생 선발 학기

계속장학생 지원(2학기)

참고1 신규장학생 제출서류 양식

양식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_____

지원 동기 장 이내
학업 진로 계획과 기여방법 장 이내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 장 이내

참고2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__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제 조 목적 본 협약은 대학 교 과 와 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 이하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대상대학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 참여 제외 대학 __학년도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이나 사업 참여 신청기간 내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제 조 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의 제반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은 재단에서 제시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설립목적 및 미래 인재양성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여야 한다

동 협약서를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장학생을 오선발하는 등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면 재단은 대학에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학은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관련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재단에 알려야 하며 장학금 지급 이후 대학이 패소한 경우 기지급한 장학금 전액 등록금 및 생활비 을 반환해야 한다 판결 확정일 기준연도 무관

⑤ 대학은 본안소송 결과 대학 패소 에 따른 기지급 장학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반환 절차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에게는 어떠한 불이익 장학금 반환 청구 등 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대학은 반환과 관련하여 재단이 반환 통보 시에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배정방식에 따라 대학에 전문기술인재장학사업 선발인원 배정 및 장학금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재단은 반환 사유 발생 시 관련 세부 기준 반환 기한 절차 등을 대학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 조 협약상의 이의 발생 조치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부씩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한 후 각 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

대학교 총장 인

참고3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 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u>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u>,**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수업료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장학금 사후 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등에 따른 기관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처리, 조사, 환수 및 강제징수 등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u>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u>**,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수업료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국가 장학사업 운영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내

	역 정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사업 수혜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

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4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장학금 수혜 시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동의

본인은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장학생 의무 준수 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3.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반환금 산정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

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습비') 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6.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9.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 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 '부정청구 등' 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10. '부정청구 등' 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팝업창]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박탈) 기준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박탈)과 기 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5 교육지원대상자의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확인서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귀중

본인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면제 전액 또는 일부 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 로서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의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교육지원 등록금 면제 과 국가우수장학금 제도 설명

본인은 등록금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이나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받음에 발생할 불이익과 등록금 면제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동의

지원 유형	동의	지원 학기	수혜 횟수
①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에 등록금 면제 관련 법령상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	0000-0학기	회
② 교육지원대상자 중 등록금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자로 대학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0000-0학기 ※ 1개 학기 이상일 경우 추가	회

본인은 등록금 면제를 기간내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등록금에 대해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받음으로써 해당 학기 국가우수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위와 같이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학번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장학담당 등 서명 또는 인